

# 아동 학대 관련 국내 문헌 고찰

## Survey of research papers on child abuse

오연주 · 윤현선\* · 박은미\*\*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 경희대학교 · 안산 1 대학

Oh, Yeon Joo · Woon, Hyun Sun\* · Park, Eun Mi\*\*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yang Univ.  
Dept. of Housing,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hee Univ.\*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san I College\*\*

---

### Abstract

Child abuse can cause children to sustain various damages including physical, mental, psychological, behaviour damages, and etc., and damages thereof have long term effects as well as short term effects. Because of its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punishment of child abuser and prevention measures are necessary. It was for this reason that we decided to produce this work which would define child abuse by examining existing studies of child abuse cases in Korea and would suggest prevention measures by analysing current situation.

**Key words** :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sexual abuse, neglect

### I. 서론

아동학대는 행위 자체의 비인간성, 비윤리성 뿐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단기에 걸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 때문에 학대자의 처벌과 아울러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불행히도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여 왔으며,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법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우리 주변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적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은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비교적 일찍부터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사회적 대책을 만들어 왔으며 반세기 가 넘는 개입의 역사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실천방법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 받고 있다. 미국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신고된 사례는 1985년 190만 케이스에서 1994년에는 310만 케이스로 63%의 증가율을 보였다(윤혜미, 1998:

---

Corresponding Author : Oh, Yeon Joo  
Tel. (02) 537-0092  
H.P. 011-716-6934  
E-mail : kangdong4995@netsgo.com

재인용). 1994년의 경우, 신고된 사례의 약 33%가 실제 학대나 방임사례로 입증되어 백만 명이 넘는 아동이 학대의 피해자로 밝혀졌다. 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은 아동과 가정의 복지가 일차적인 관심이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차적인 것으로 법적인 시각보다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적 시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법에서 보듯이 사회전체에 아동보호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 아동이나 가족과 임상적인 접촉을 하는 전문가에게 강제적인 신고의무를 둔 점에서 그 기본 정책방향이 확연히 드러난다(윤혜미, 1998: 재인용).

대만의 경우,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은 198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의 대표적인 아동복지기관인 중화아동기금은 1987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동학대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간 내에 682건의 심각한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하기 위해 중화아동기금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만의 아동관련 법규는 학대받는 아동의 분리보호, 학대부모의 친권중지와 감호인 선정,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가중처벌, 가해자 및 신고 미필자 처벌, 교육명령 불이행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적 신고의무자로는 의사, 교사, 사회사업가, 임상심리전문가, 간호사, 보육관계자,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학대 사실 발견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처벌규정은 벌금형과 신문에 명단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배근, 1988: 재인용).

일본의 경우는 빈곤에 의한 아동학대는 크게 감소하고 이보다는 사회와 가족의 급속한 변화에 의한 가족의 정서적 허약성과 혼란성 및 스트레스 메커니즘의 매개로 인한 병태적인 신아동학대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보면 아동복지법을 축으로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미국 등에서 보여지는 아동학대 방지대책법과 같은 단일법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김만두, 1998: 재인용).

호주의 경우, 호주의 가정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믿어왔고, 1966년 호주 의학지는 호주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었지만, 1987년에 아동학대와 방임 국가협의회가 설립되어 현재는 아동학대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이영은, 1995: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가 1989년 아동학대예방협회가 창립된 이후 미흡하게나마 연구되어 왔으나 대부분 특정 지역이나 병원 시설에 있는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이루어진 조사는 거의 없다(김재엽·조학래, 1998). 특히 사회적, 가정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IMF 이후 우리 주변의 아동학대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가 1998년 10월말까지 집계한 아동학대 신고상담건수는 모두 172건으로 1997년 1년간 신고된 91건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 역시 아동보호단체인 이웃사랑회에 1998년 10월말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도 301건으로 1997년 한해 접수된 169건을 크게 뛰어 넘고 있다(임지현, 1998: 재인용). 그러나 우리 나라의 문화적인 특성 상, 성장기의 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경우,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과 아동학대는 대물림의 특성이 강하여 학대 재생산된다는 심각성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홍강의,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선행문헌들을 고찰하여서 아동학대의 정의를 체계화하고 아동학대의 실태파악과 나아가서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책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학대와 관련된 연구들을 연구주제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결론과 제언을 덧붙였다.

## II. 아동학대에 관한 국내 문헌 고찰

아동학대에 관해 국내에서 연구된 내용을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즉,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을 정의한 연구, (2) 아동

학대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3) 아동학대의 발생현황 및 대책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방법에 따라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논문

우선 미국 연방정부에서 정의한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복지에 대해 책임 있는 자가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학대, 무관심, 부적절한 양육을 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해롭거나 위협을 가하는 상황하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는데, 이 정의에서 학대의 주체자를 부모로 한정하지 않고 아동복지에 책임 있는 자로 명시하여 가정 외 학대까지 포함시켰다(채혜정, 1994: 재인용). 이 개념에 따라 각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신영화, 1986; 이소희, 1990; 김미경, 1987; 허남순, 1993; 주영희, 1980; 김동춘·홍강의, 1995).

#### 1) 신체학대

협의의 의미에서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신체적 학대란 아동에게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신체에 벌을 가하거나 가해서는 안 될 벌을 부당하게 가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학대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이 신체적 학대를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손상을 가져오며 발견하기도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보호자나 양육자에 의해 체벌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손상행위를 통틀어 신체적 학대라고 하며, 심한 구타나 발길질 뿐만 아니라 불로 지지거나, 가위 따위의 흉기로 찌르거나 높은 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행위들도 포함되며, 과도한 노동도 포함시키는 의견도 있다(허남순, 1993; 김유정, 1994).

#### 2) 정서학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발달이나 사회성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

로 언어적 또는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아동이 공포를 느낄 정도로 고립시켜두거나 아동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모욕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채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 3) 성학대

성학대는 '미성년의 아동과, 청소년을 가족간의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성적 활동에 개입시키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근친간간의 경우를 말한다. 이 밖에 가족 구성원 외의 양육자나 교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가정 밖의 성폭력도 이에 속한다. 성학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는 사회분위기와,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이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대부분 은폐되어 조기에 발견과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 4) 방임

방임은 음식, 위생, 난방, 의복, 감독, 자극, 안전주의, 의료보호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거나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아동이 그대로 방치하는 신체적 방임, 정기적인 검사는 커녕 아동이 아픔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쓰다듬고 안아주지 않는 등 정서적·신체적 접촉이 결핍된 정서적 방임,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적, 물질적 자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교육적 방임, 그리고 불건전한 성적 내용을 다룬 매체의 자극에 노출되도록 한 성적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하여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종복·이배근·홍익제, 1997).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상의 유형과 유형의 정의에 따르고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대두된 논란은 방임을 아동학대에 포함시켜야하는 지에 대한 것이다. 아동학대를 광의로 정의하는 입장에서는 방임을 학대와 구분하지 않고 학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진단과

진료 목적에서는 구분이 필요하겠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입장에서는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방적 개입을 지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관점을 지지하고 있으며(신영화, 1986; 이소희, 1990; 김미경, 1987; 허남순, 1993), 신영화(1986)는 아동학대의 주체자를 부모나 양육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이소희(1990)는 학대의 주체를 개인에서 환경체계로까지 범위를 확대시켰다. 허남순(1993)은 학대의 주체를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개인, 사회, 또는 제도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신체학대, 정신적 학대, 성학대, 방임, 태만 그리고 유기로 나누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방임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입장에서는 방임은 부모의 의도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되기 쉽고 문화적 박탈감과 관련되므로 아동학대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학대와 방임의 발생원인은 구별되지 않지만, 증상에서 충분히 구별되므로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방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성혜(1992)의 정신과 의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가진 학대에 대한 정의에 관한 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방임을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방임의 제외에 대한 지지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방임을 제외한 아동학대의 개념 규정시 신체적 학대와 비신체적 학대의 구분에 대한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 Kemp와 Helfer(1980) 등이 주축을 이루는 임상의학분야에서는 비신체적 학대보다 신체적 학대의 기준과 규정이 보다 용이하고 의학적 검증에 의존할 수 있으며 법적증거로 제시될 수 있어, 아동학대에 관한 사후처리적 개입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만을 아동학대로 보고있는데 반해, Cook, Szur(1980) 등은 비신체적 학대의 심각한 위해 결과를 제시하면서 비신체적 학대 역시 아동학대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곽영숙·홍강의, 1987;재인용; 김동춘·홍강의, 1995;재인용). 국내의 대부분의 논문은 비신체적 학대를 학대에 포함시키고 있어(주영희, 1980; 신영화, 1986; 이소희, 1990; 허남순, 1993; 황영희, 1984; 고성혜, 1989; 이영희, 1994; 정진성, 1995) 정서학

대, 성학대 등에 대한 관심도 높음을 보였다.

또 다른 논란은 신체적 학대와 훈육을 위한 체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통적으로 체벌을 훈육상 자녀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데 불가피하다는 우리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디까지가 훈육상 필요한 체벌이고 어디까지가 학대인지의 구분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성혜, 1992;재인용). 우리 나라의 경우, 체벌은 청소년 범죄나 좋지 않은 행동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체벌을 훈육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체벌은 교육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정서적 발달이나 성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 교육적인 체벌은 훈육의 수단으로 수용하되 비교육적인 체벌의 경우는 아동학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통념은 고성혜(1992)의 연구결과에서 잘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신과 의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가진 학대에 대한 정의에 관한 연구로, 정신과 의사는 임상의학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자녀 교육시 체벌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신체적 학대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신체적 학대에 대한 개념규정이 보다 엄격하였고, 반면 초등학교 교사는 부모의 심한 구타 행동과 심각한 상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구타는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녀가 잘못할 때 체벌하는 행위에 대해 높은 허용도를 보여 한국 사회의 체벌에 대한 학대 인지도가 낮음을 보고하였다(채혜정, 1994; 노혜련, 1992).

장화정(1998)은 실무현장에서 아동학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개발하여 포괄적인 아동학대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저마다의 아동학대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어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기 어려우며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꼭 필요한 작

업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학대의 개념을 정리하면 '아동학대란 아동의 양육에 책임 있는 양육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주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논란의 대상인 방임의 포함 여부는 방임의 결과 규명이 어렵기는 하지만 방임 역시 아동의 정상적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구별방법의 용이성을 떠나 아동의 보호목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아동학대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신체적 학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아동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학대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근래에도 교실이나 가정에서의 훈육상 체벌을 용인할 것인지 여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나, 교실에서의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학생통제 불능상태에 빠진 교육의 현실을 볼 때 어느 정도 교육상 체벌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는 방향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단 교육상 체벌의 한계를 분명히 명시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 2. 아동학대와 관련 변인에 관한 논문

아동학대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피해자인 아동 자신의 변인과 가해자와 관련된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가해자의 변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크게 아동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와 부모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두 부류로 나누어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 1) 아동 자신의 변인

아동 자신의 변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적용한 바와 같이 아동의 성, 연령, 성격, 건강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아동의 성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신체학대의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해 신체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남아가 여아보다 3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곽영숙·홍강의, 1987), 김광일·고복자(1987)와 신영화(1986)도 남아가 더 신체적으로 학대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했다. 반면에 한국 아

동학대예방협회의 보고(1992)에 의하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학대받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영희(1994)도 9년간(1985-1993) 아동학대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여아가 남아보다 학대받는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서학대와 아동의 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일반아동의 경우, 아동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고(신영화, 1986; 고성해, 1989), 가출아동의 경우는 남아보다는 여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신영화, 1986).

아동의 연령에 따른 연구 중, 유춘식(1989)에 의하면 학대아동 중 8-13세가 가장 많았으며, 12·13세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은 체격도 크고 물리적 힘에 대항할 능력도 있으며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동도 있을 수 있어 어머니가 신체적 학대를 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10-11세의 4학년 아동은 체격이 왜소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기가 보다 쉽다는 측면에서 신체적 학대에의 노출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 외에 아동 자신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신체나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은 정상아보다 양육의 어려움이 크므로 부모에게 높은 스트레스와 피곤을 주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며, 이런 문제들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김혜영, 1990; 김정준, 1986; 신영화, 1986). 출생순위 및 형제 수와 아동학대 발생간의 관계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형제수가 많은 가정의 아동들에게서 빈번한 체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했다(신영화, 1986).

아동 자신의 성격과 학대의 관련성은 친구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잘못된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아동이 신체적으로 학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준, 1986). 교우관계는 아동의 사회성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변인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진 아동은 교우와 원활한 의사교류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므로 학대에 노출될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과 학대 발생빈도간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였는데, 이는

학대아동을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대받은 아동이 있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떳떳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이를 감추려하므로 정확하게 연구, 조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며, 상반된 결과의 도출은 이러한 조사대상 모집단의 선정의 어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가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예방의 차원에 주안점을 두는 만큼 연구자의 모집단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모집단 선정의 적절성과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검증에 대해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서학대의 경우 연구가 미흡한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집단과의 용이치 않은 접근성과 아울러 아동의 정서학대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서학대를 판별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령에 따른 학대 빈도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학대에 노출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아동 자신의 신체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회성 발달이 부진할 경우 학대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 2) 부모와 관련된 변인

아동학대와 부모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 연령, 직업, 결혼 만족도, 성격, 주거환경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부모의 학력과 아동학대의 관계 연구에서 주영희(1980)는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높으며,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가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보다 아동학대를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동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부모의 학력에 따라 학대의 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연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출아동의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35세 이하인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어머니의 연령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신영화, 1986). 반면에 고정자·김갑숙(1992)은 연령이 젊은 어머니가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구타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앞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구타의 가해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높게 나타난 경우

도 있고(박명윤, 1995), 반대로 아버지가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이영희, 1994).

부모의 직업에 있어서 무직이거나 사회적 인정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높고,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아동학대가 낮았다(신영화, 1986; 고정자·김갑숙, 1992). 취업모의 경우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과중한 부담,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 어머니의 많은 가사노동 요구가 스스로 부담이 되어 학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소희, 1990).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신체적 학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도 제시되었다(서은주, 1994).

결혼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도가 낮아 부부간의 불화가 심하고, 부부간의 구타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부모는 갈등과 적개심을 방출하기 위해 자녀를 속죄양으로 삼아 학대한다고 하였으며(소숙희, 1986; 고성혜, 1992),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아동에 대한 물리적 지원이 부족하게 되고, 가족원의 긴장과 불안수준이 높아져 방임 및 정서적 학대 수준이 특히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소희, 1990; 고성혜, 1989). 특히 신영화(1986)는 부부가 폭력적일수록 아동훈육에서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높으며, 부부간 폭력의 발산방법에 따라 학대의 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모의 성격 또한 아동학대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사회적 고립과 대인관계의 결함이 있는 부모는 쉽게 좌절하고 성을 내며 적의적이고 공격적인 유형으로 그들의 좌절감을 표현하며, 이는 학대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혜영, 1990).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아파트 지역에 사는 아동보다 단독주택에 사는 아동이, 단독주택보다는 상가 지역에 사는 아동이 더 심하게 매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공간이 협소할수록 매 맞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열악한 주거형태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에 노출되기 쉬울 것으로 보았다(김광일·고복자, 1987).

고정자·김갑숙(1992)은 아동학대의 대물림에 대한 중요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의하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폭력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이같이 폭력이 모방 학습되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소희(1990)는 연구에서 부모의 아동에 대한 거부적, 권위적 태도 및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학대를 증가시키고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아동이 학대 상황에 노출되기 쉬울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학대와 부모관련 변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직업 유무, 직업의 수준, 결혼 불만족에서 오는 부부간의 갈등, 사회, 경제적 수준 및 가족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대인관계 결함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아동학대는 모방 학습이 되어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아동학대의 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학대의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는 교육에 의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3. 아동학대의 발생현황 및 대책

아동학대의 발생현황에 관한 조사연구는 대부분 외관상으로 관찰 가능하거나 아동 스스로 뚜렷이 느낄 수 있는 신체적 현상이 동반된 체벌이나 성학대에 집중되어있다. 이는 정신적 학대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불분명하고, 의학적으로 쉽게 진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발생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체학대의 가장 명확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아동구타의 발생률 조사에서 1987년 일반아동의 경우 18.0%가 매주 1번씩 부모에게 매를 맞으며, 8.2%가 매주 1번 이상의 심각한 매를 맞았고(김광일·고복자, 1987), 우리 나라 아동의 81.5%가 구타를 경험한 바 있고, 그 중 3.0%가 매우 심각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허남순, 1993). 박명윤(1995)은 서울시내 초등학교 4, 5, 6학년 1,045명을 대상으로 신체학대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4년 한해 동안 가족으로부터 매를 맞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 76.7%, 심하게 구타당한 아동이 9.4%였으며 경하게 매맞은 아동은 67.3%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그리고 심하게 매를 맞았으며, 구타 행위자는 어머니가 78.8%, 아버지가 55.1%, 형제 또는 자매가 30.3%에 달했다. 부모의 직업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 직업이 있는 가정(아동 구타율 77.2%)이나 부모가 맞벌이하는 경우(구타율 78.6%)보다 부모가 무직인 가정(80.0%)의 아동 구타율이 더 높았다. 구타형태도 팔이나 손, 발 등을 이용한 단순 구타 외에도 칼이나 흉기로 찌르거나 때리는 경우(3.1%),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2.0%) 등 위험한 경우도 있었다. 매 맞는 이유에 대한 아동의 인지도는 경하게 맞은 아동들은 10.9%가, 심하게 구타당한 아동들은 18.3%가 자신이 맞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박명윤, 1995). 이영희(1994)는 서울 시립상담소에서 지난 9년간(1985-1993)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사례 231건을 분석한 결과 남아보다는 여아가 많았고, 초등학교생이 전체의 50%, 취학 전 아동이 23% 등으로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행위자를 보면 생부가 차지하는 학대건수가 97건(42%)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반면 생모에 의한 경우는 16건(6.9%)에 불과했다.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했을 때의 아동학대는 각각 79건(34%), 51건(22%)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의 경우 신영화(1986)의 연구에서 1985년 가출아동의 17.0%, 일반아동의 1.9%가 성적 노출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가출아동의 8.0%, 일반아동의 1.1%가 반복적인 성적 모독을 당했으며, 성적 학대의 행위자는 가출아동의 경우는 부가 15.0%, 일반아동의 경우는 부와 모가 각각 3.0%로 보고되었다. 정동철(1989)의 보고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중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접촉을 가진 경우가 5.5%이었고, 위협이나 폭력 등으로 부득이 성교를 한 경우가 6.1%로서 심각한 성적 폭행을 당한 사람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1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해 온 경우 어린이가 전체의 14.5%, 중고생이 19.5%이며, 이 중 73.8%가 근친이며 친척, 또는 아는 사람 등에 의한 강간으로 나타났다(박은영, 1998). 이종복(1991)은 조사

결과 청소년의 13%가 강제로 성적 학대를 받았고, 초등학교 시기에 당한 사람이 12.3%,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기가 65.8%라 보고하고 있다.

정서학대는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나, 정서학대는 신체적인 학대와 성적 학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신체적인 학대와 성적 학대를 받는 아동들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가출 아동이나 비행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 청소년들보다도 10배 이상이나 정신적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까지 한국의 경우 방임이나 태만의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된 것은 없으나 가정으로부터 방임되고, 사회로부터 방치된 많은 수의 소년 소녀 가장이나, 해마다 부모로부터 유기되는 대략 14,000여명의 아동들을 생각하면 그 발병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최윤라(1998)는 기관에 일시보호 되어있던 14-16세의 남녀가출아동을 대상으로 방임을 신체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으로 나누어 조사한 바 있는데, 혼자서 집을 보게 하는 경우가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점심을 먹지 못하거나 아침을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도 각각 45.6%, 30.9%로 높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교육적 방임에서 학교에 내는 돈을 제때 챙겨 주지 않는 경우가 48.6%, 준비물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41.2%, 학용품들 다 써도 잘 사주지 않는 경우가 23.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이영은, 1995).

유기에 대한 이배근(1988)의 연구에서 보면 한국어린이재단에 비치된 전국 227개 이동복지시설 아동카드 가운데 입소동기가 분명한 10,686명의 아동카드를 조사한 결과 기아의 발생장소는 시설 근처(8.6%), 시, 군, 군청(5.6%) 아동상담소(2.7%) 순이었으며, 기아발생 원인으로는 부모의 이혼, 사망, 행방불명 등이 38.1%, 부 사망, 모 가출(재혼)등이 32.6%, 모 사망, 부 재혼(가출)등이 9.7%, 미혼모 또는 기타가 19.6%로 나타났다. 특히 기아발생 원인으로는 계모의 학대가 34, 친형제의 학대가 5, 양부모의 학대가 3개 사례로 나타난 것은 아동유기의 원인 가운데 아동학대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경

제악화 이후 한국 이웃사랑회(1997)에 신고 접수된 건수가도 97년의 2배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아동학대 신고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 내에 숨겨진 채 행해지고 있을 아동학대의 현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학대의 대책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박태영(1989), 전금중(1990), 박균성(1990), 신년호(1994), 박은영(1998) 등이 있다. 박태영(1989)은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비교연구하였는데, 그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을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책의 수립, 학대 고발대책 수립, 아동학대와 방임의 고발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과 의무 및 법적 절차 제정 등의 필요성을 밝혔다.

전금중(1990)은 한국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가 아직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치료적 개입보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일차적인 예방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고 보고, 학대받는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된다는 악순환 현상을 생각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인간적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악의 악순환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그 사회대중의 교육, 조기 유아교육시설의 활용, 의료시설을 통한 예방책, 학대신고 보호체계, 벌칙조항 보완, 저소득층 지역사회 복지관의 운영, 체벌문화의 탈피를 아동학대의 대책으로서 제시하였다.

박균성(1990)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 국가의 강제력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입해야하므로 아동학대 문제도 일차적으로는 사회의 자율적 노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심각한 경우에는 아동보호를 위한 법의 제재나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와 피학대아동을 위한 적극적 보호 조치로 나누어 제시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제재는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의 추궁, 학대부모의 친권상실 선고와 학대교사의 내부적 징계를 들었다.

신년호(1994), 박은영(1998)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치료를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방법을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위기 개입에 즉각적 개입 방법과 학대부모 및 아동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 방법의 구체적인 예를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해자의 처벌이나 피해자의 치료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무엇보다 부모, 가족 구성원, 교사 등 양육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중적 교육이 필요하며, 학대의 신고체계를 정립하여야 하며, 또한 학대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관 설립 등의 복지정책도 시행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II. 결론 및 제언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모색해야 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향후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해 연구된 내용을 아동학대의 정의에 관한 연구, 아동학대 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의 정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방임을 아동학대의 범주에서 제외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정의하는 목적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방적 개입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방임 역시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문화는 전통적으로 훈육을 위한 체벌을 허용하는 편으로, 훈육 상 체벌과 신체학대의 구분이 매우 모호한 실정이며, 그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훈육상의 체벌의 효과와 아동의 권리 측면 모두를 심층 검토하여 신중한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

체로 아동 자신의 변인과 부모와 관련된 변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아동 자신의 주요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성격, 건강변인이 있는데, 성별의 경우 성에 따른 차이에는 연구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론이 제시되었고, 연령의 경우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사회성이 부진하여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아동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관련된 변인 중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직업 유무, 직업의 수준, 결혼 불만족에서 오는 부부간의 갈등, 사회, 경제적 수준 및 가족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대인관계 결함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아동학대는 모방학습이 되어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아동학대의 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학대발생이 적은 점은 역설적으로 부모에 대한 교육이 아동학대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발생현황에서 IMF로 인한 경제악화 이후 아동학대 신고 상담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점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통계에 나타난 현황은 우리의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내에 숨겨진 채 행해지고 있을 아동학대가 병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신고체계의 정립 또한 시급하다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학대받은 피해자나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므로 무엇보다 연구자가 이러한 자료에 접근이 용이하거나, 모집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학대받은 아동이 있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떳떳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이를 감추려하므로 정확하게 연구, 조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며, 본문에서와

같이 서로 상반된 결과의 도출은 이러한 조사대상 모집단의 선정의 어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가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재발방지과 예방의 차원에 주안점을 두는 만큼 연구자가 모집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연구자는 모집단 선정의 적절성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검증 등에 대해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서학대와 같은 정신적인 측면의 학대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집단과의 용이치 않은 접근성과 아울러 아동의 정서학대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서학대를 판별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예방적 차원을 중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모, 가족, 교사 등에 대한 대중적 교육, 학대 신고체계의 정립, 학대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설립,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관 설립 등과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부모의 역할수행을 도와야 하고 아동 양육에도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될 것이다. 특히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중후 발견과 응급조치에 대한 규정이 준비되어 가고 있으나 성학대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데 반해 성학대의 경우 사회적으로 은폐하는 문화 때문에 발견 및 명확한 조치규정에 관한 해답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 치료,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신고의식이 미약하고 신고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1997년에 국내 의료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에서 학대아동 보호와 치료를

전담하는 기구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최소한 대학 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겠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 또는 집단 보호시설 내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있으며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고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거나, 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학의 관련 학과 등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지역사회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주제어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 참 고 문 헌

- 고성혜(1989).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61-171.
-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 규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정자·김갑숙(1992). 부부갈등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13(1).
- 박영숙·홍강의(1987).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 6, 37-52.
- 김광일·고복자(1987). 아동구타의 발생률 조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 6, 66-81.
- 김동춘·홍강의(1995). 유아학대 및 반영 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3, 18-19.
- 김미경(1987).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14, 39-72.
- 김만두(1998).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책의 고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8, 1-24.
- 김정준(1986).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정(1994).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 방법. 효성여대 석사학위 논문.
- 김은미(1997).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국민대학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조학래(1998). 한국 가정의 자녀폭력 실태와 문제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8, 25-30.
- 김혜영(1990). 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1993).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체계론적 접근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노혜련(1992). 아동훈육과 아동학대의 구분; 문화적 배경의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19, 113-137.
- 박균성(1990). 아동학대의 법적 고찰, 아동학대 현황과 대책. 충남아동학대 예방협회, 제 1차 세미나자료.
- 박명운(1995). 결혼가정에 나타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의, 14, 63-89.
- 박태영(1989).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1998).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 서은주(1994). 아동학대의 발생현황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소숙희(1986).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년호(1994).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정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심영희(1989). 성범죄 성폭력의 사회 구조적 배경. 교정 2월호, 31.
- 안동현·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 6, 53-62.
- 연진영 (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 유춘식(1989). 아동 권익보호 신고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현황.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 14, 7-36.
- 윤혜미(1998). 미국의 아동학대 방지법과 정책결정. 한국아동예방협회 세미나, 17, 258-259.
- 이배근(1988). 아동유기의 현황과 대책. 한국어린이재단·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자료, 119-134.
- 이영희(1994). 아동학대 현황과 과제. 아동학대예방협회, 1-21.
- 이영은(1995).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책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 (1990).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분석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종복 (1991). 청소년의 성적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원, 한국청소년 연구, 6, 21-28.
- 이종복·이배근·홍익재(199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아동학대예방협회, 6, 13-20.
- 임지현(1998). 아동학대와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화정(1998). 아동학대 평가척도.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 전금종(1990). 한국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정동철(1989). 대도시 청소년의 성폭행 실태조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4, 15-16.
- 정진영(1995). 이혼 가정에서의 아동문제.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 14, 20-25.
- 주영희(1980).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에 대한 조사 연구. 사회복지, 80, 71-133.
- 채혜정(1994).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부모·자녀·전문가의 지각.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최윤라(1998).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갤럽조사 연구소(1980).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제1권,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6.
-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1992). 현행 법 체계와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8, 4-27.
- 한국 이웃사랑회(1997). 아동학대 상담 사업연구. 한국 이웃사랑회 사업 연구집.
- 허남순(1993).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18, 23-45.

- 홍강의(1989). 아동구타의 예방과 대책.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 6, 82-93.
- 홍강의(1992). 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전국대회자료집, 213-230.
- 황영희(1984). 부모의 결혼 만족도와 아동 학대와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Kemp, C.H. and Helfer, R.E.(1980). Helping the battered child and his family. Philadelphia, Lippincottco.